

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30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년 4월 15일

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4. 30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가족정책과장 김정근)

□ 제안이유

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○ 일반현황

연번	어린이집명	행정동	소재지	시설규모		정원	위탁기간(예정)
				연면적(㎡)	층수		
1	마곡15 누리	발산1동	마곡중앙로 36	517	1	82	2024. 11. 1.~ 2029. 10. 31
2	구립 벗고을	화곡6동	화곡로58길 100	315	4	79	2025. 1. 1.~ 2029. 12. 31.
3	해다미	화곡2동	곰달래로35길 13	605	3	141	2025. 1. 1.~ 2029. 12. 31.
4	구립 하늘숲	화곡3동	강서로45다길 102	533	3	83	2025. 1. 1.~ 2029. 12. 31.
5	발산	우장산동	우장산로 45	583	3	141	2025. 1. 1.~ 2029. 12. 31.
6	구립 해담	방화2동	금녕화로11길 36	316	5	73	2025. 3. 1.~ 2030. 2. 28.
7	구립 새하늘	화곡1동	강서로17다길 15-14	396	4	92	2025. 3. 1.~ 2030. 2. 28.
8	구립 하늘마음	화곡본동	초록마을로 106	380	3	51	2025. 3. 1.~ 2030. 2. 28.
9	구립 아이나무	화곡3동	화곡로13가길 5	294	3	48	2025. 3. 1.~ 2030. 2. 28.
10	구립 엠벨리큰나무	가양1동	마곡중앙8로1길 10	496	3	70	2025. 4. 1.~ 2030. 3. 31.
11	구립 신태양	화곡2동	곰달래로31다길 25	714	4	99	2025. 4. 1.~ 2030. 3. 31.

○ 위탁운영체 현황

연번	어린이집명	위탁체	원 장	위탁기간 (현행)	비고
1	마곡15 누리	대한예수교장로회 늘빛교회	권혜은	2020.11.1.~ 2024.10.31.	
2	구립 벗고을	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	이민선	2020.1.1.~ 2024.12.31.	
3	해다미	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	김미령	2020.1.1.~ 2024.12.31.	
4	구립 하늘숲	한국기독교장로회 발음교회	이정선	2020.1.1.~ 2024.12.31.	
5	발산	대한불교조계종 성심사	김진영	2020.1.1.~ 2024.12.31.	
6	구립 해담	개인(이경숙)	이경숙	2020.3.1.~ 2025.2.28.	
7	구립 새하늘	한국기독교장로회 신광교회	온경숙	2020.3.1.~ 2025.2.28.	
8	구립 하늘마음	모아맘보육재단	백금숙	2020.3.1.~ 2025.2.28.	
9	구립 아이나무	사회복지법인 송천복지재단	선고은	2020.3.1.~ 2025.2.28.	
10	구립 엠밸리큰나무	개인(박서정)	박서정	2020.4.1.~ 2025.3.31.	
11	구립 신태양	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	한진아	2020.4.1.~ 2025.3.31..	

나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,
- 구립어린이집은 아동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음

다. 주요 위탁내용

○ 위탁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」 제29조(위탁기간)

○ 위탁체 선정: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

○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5년

○ 위탁사무

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,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
- 영유아 보호와 교육, 예산계획 및 집행,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-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

○ 소요예산(2025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연번	어린이집명	합 계	인건비	운영비
1	마곡15 누리	381,925	362,991	18,934
2	구립 벗고을	375,408	330,013	45,395
3	해다미	666,848	613,279	53,569
4	구립 하늘숲	425,745	385,208	40,537
5	발산	631,548	572,773	58,775
6	구립 해담	449,002	416,970	32,032
7	구립 새하늘	418,092	379,735	38,357
8	구립 하늘마음	357,834	337,316	20,518
9	구립 아이나무	376,580	359,468	17,112
10	구립 엠밸리큰나무	415,480	394,833	20,647
11	구립 신태양	477,342	410,658	66,684

라. 추진일정

- 2024년 2 ~ 3월: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수립
- 2024년 4월: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
- 2024년 4월: 제303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(11개소)
- 2024년 8 ~ 12월: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탁체 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」 제29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(마곡15 누리, 구립 벗고을, 해다미, 구립 하늘숲, 발산, 구립 해담, 구립 새하늘, 구립 하늘마음, 구립 아이나무, 구립 엠밸리큰나무, 구립 신태양)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, 재위탁¹⁾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

1) 재위탁: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일 말한다.
재계약: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-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²⁾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에 용이하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
- 해당 사무는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임
- 또한, 매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, 원장의 전문성, 향후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2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」

제29조(위탁기간)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.